

---

# 인터넷 선거 광고 관련 법령 및 사례 안내

---

2018. 5.

# 목차

- I. 선거 광고의 정의
- II. 인터넷 선거 광고 가이드
- III. 인터넷 선거 광고 집행 기간
- IV. 인터넷 선거 광고 집행 방법

## I. 선거 광고의 정의

### □ 의의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광고”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하여 시행하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운동에 관한 광고를 의미함.(「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82조의 7 제1항)

### □ 광고의 주체

- 광고의 주체는 해당선거의 후보자이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도 해당됨.(「공직선거법」 82조의 7 제1항)

### □ 광고의 매체

- 인터넷 선거광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음.

※ 위반 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

#### (1) 검색광고(키워드광고)의 인터넷광고 해당여부

- 인터넷 검색광고(키워드광고)는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7에 따른 인터넷광고에 해당됨

#### (2) 지방자치단체의 ‘네이버 해피빈스폰서십’ 상품구매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네이버 해피빈스폰서십’ 상품구매 등은 위법성이 없음(‘09.12.03)

## □ 인터넷언론사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선거기간 중 인터넷 동영상 포털사이트에 “인터넷언론사”와 동일 내용의 후보자 동영상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터넷 동영상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후보자의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음.(’06.05.15)</li></ul></li><li>• 일반일간신문(지방일간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되는지 여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일반일간신문(지방일간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면 “인터넷언론사”로 볼 수 있음(’06.01.18)</li></ul></li><li>• 디지털 조선일보, 조인스닷컴, 연합뉴스, 인터넷 한겨레 및 포털의 미디어(뉴스)분야가 인터넷 광고가 가능한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되는지 여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직선거법」 제82조의 7(인터넷광고)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해당(’05.10.05)</li></ul></li></ul> |
|---|

## II. 인터넷 선거 광고 가이드

### □ 인터넷광고 집행 시 법률적 확인사항

#### ○ 자율적 광고 집행

- 선거광고는 별도의 심의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 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의회답은 가능.

#### 【 문 】

당사는 2017. 3. 15.경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카카오톡 기반의 플랫폼인 '플러스친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플러스친구 서비스'를 통해 후보자를 친구로 추가한 이용자들에게 정책, 공약, 활동, 일정 등의 콘텐츠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70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바, 더 많은 카카오톡 친구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에 후보자의 플러스친구를 추가하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싶다는 후보자의 요청이 있어, 당사의 '플러스친구 크로스미디어' 서비스를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고자 하오니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플러스친구 크로스미디어' 서비스는 카카오 이용자들이 제휴사의 플러스 친구를 경험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방법으로, 기존에 이미 광고주들이 검색 광고를 활용하면서 광고주들의 미디어 광고 하단에 '검색창에서 ○○○를 검색하세요' 라는 식으로 기재하는 널리 대중화되어 있는 마케팅방식과 유사한 서비스로서, 다양한 제휴사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 카카오 플러스친구 크로스미디어 서비스 개요 》

- 후보자의 TV CF에 카카오바 이미지를 삽입하여 후보자 본인의 플러스친구를 홍보할 수 있음.
  - ※ 플러스친구 : 후보자가 개설한 플러스친구 계정을 친구등록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약, 정책, 일정 등 메시지 발송 및 게시물 작성이 가능한 서비스 (현재 각 정당 후보자 00명이 개설)
- 유권자가 TV CF에 삽입된 카카오바를 확인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해 후보자의 플러스 친구가 될 수 있음
- 플러스친구 크로스미디어 적용 예시

#### 【 답 】

귀문의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및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 광고를 하는 때에 통상적인 광고 교환비율(바터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광고 교환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터넷광고 비용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임. 다만, 통상적인 광고 교환비율보다 높게 적용하는 때에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조 및 제45조에, 통상적인 광고 교환비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17.04.1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답)

## □ 법률상 금지되는 광고

### ○ 일반적 주의사항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광고” 는 현행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가능하지 않음.
- 광고의 소재·분구의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체(후보자, 정당 등)에게 실증책임이 있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선거광고를 집행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언론사에 광고소재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 【 문 】

본 사는 현재 모바일 홍보 플랫폼 ‘모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모빙’ 제작 및 비용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1. 평소에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직선거입후보예정자가 본사의 ‘모빙’을 통해 모바일명함·소식지를 제작하여 간단한 자기소개 및 활동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 모바일명함·소식지는 지방자치단체장등이 자신의 SNS를 통하여 전송함.
2.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모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3.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거벽보·선거공보에 QR코드 및 URL주소를 삽입하여 위 ‘모빙’ 서비스에 접속하게 할 수 있는지?
4. 위 2·3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부담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모빙’ 서비스 제작비 및 유지관리비를 선거비용에 포함하여 보전 받을 수 있는지?

####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귀문과 같은 모바일 홍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7·제93조·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그의 사진·활동영상을 포함하는 때에는 금지되는 광고출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의7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하는 것은 같은 법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같은 법 제1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합니다.('17.12.18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허용

### 【결정요지】

- 2011.12.29. 선고 2007헌마100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결국 허위사실, 비방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치적 표현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점,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기본권 제한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그 기간 '통상적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에서 제외됨으로써 정당의 정보제공 및 홍보는 계속되는 가운데, 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여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상시적 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요청 등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는 이미 별도로 입법화되어 있고, 선거관리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 상 선거운동의 상시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오고 있는 점, 일정한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하여 일정한 기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소침해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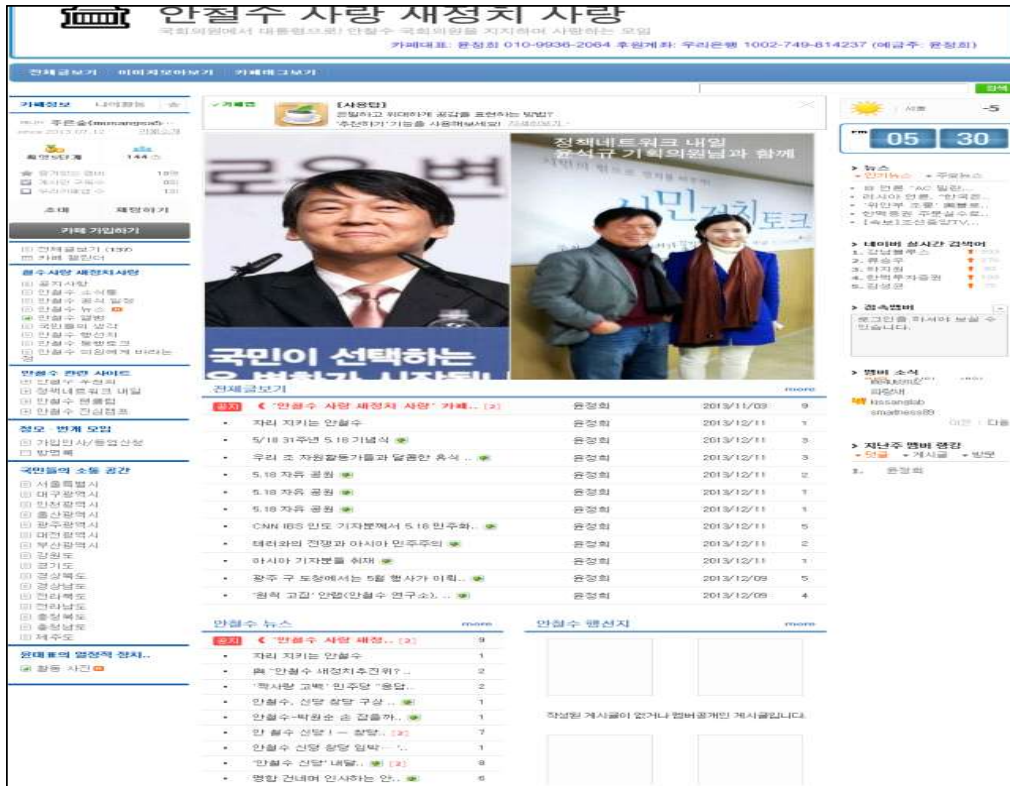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법익균형성 판단에는 국민의 선거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및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라는 공익 또한 감안하여야 할 것인데,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각종 선거가 빈번한 현실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정치인 팬클럽 홈페이지의 인터넷 검색광고

【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제93조

【 문 】

1. 자사[NAVER Business Platform(주)]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검색결과 페이지에 미리 등록해 놓은 광고를 노출해주는 형식의 광고상품(이하 검색광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검색광고란 광고주의 잠재 고객이 네이버의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광고주의 사이트를 보여주는 광고이며, 광고주의 사업아이템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에 광고를 등록하면 수많은 잠재 고객에게 광고주의 사이트를 홍보할 수 있음.
2. 자사의 검색광고를 통해 특정 사이트를 광고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리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사의 검색 광고를 통해 다음의 사이트를 광고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검색광고 등록 요청자 : 제3자(안철수 사랑 새정치 사랑 대표)
  - 검색광고 등록 요청 사이트 URL: <http://cafe.naver.com/ahnclslove>
  - 검색광고 등록 요청 사이트명: 안철수 사랑 새정치 사랑
  - 사이트(카페) 내용 : 안철수 국회의원과 관련된 언론보도 자료 등 게재



【 답 】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팬클럽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홈페이지의 명칭·주소 및 소개 등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형태의 검색광고를 이용하여 자신의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같은 법 제82조의7에 따라 자신의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검색광고를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것은 그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7,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13. 12.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 허위사실 공표, 비방 및 유포 등 금지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됨.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

※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안됨.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직선거법」 제251조)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광고 집행 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직선거법」 제253조)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안됨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포·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됨(「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IV. 인터넷 선거 광고 집행의 기간

○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선거 광고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즉, 선거운동 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함(「공직선거법」 제59조 제1호 및 제3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1. 국회위원의 의정활동을 촬영한 연설 동영상 또는 녹음 파일을 이용해 의원실이 음원과 UCC를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상에서 배포 및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촬영한 음원이나 UCC를 자기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토론방 등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함(11.03.28)
2. 정당의 공모전을 위한 인터넷 광고 집행 및 공모전 당선자의 상금 지급가능 여부
  -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정당의 공모전을 위한 광고는 무방하며, 공모전 당선자의 상금 지급도 가능함. 단, 통상의 시상 금품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금품을 시상하는 것은 아니 됨. (10.3.3)
3. 정당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함(10.2.22)
4.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해 선거와 무관한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에 위반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됨(08.10.28)

## V. 인터넷 선거 광고 집행의 방법

- 인터넷 광고에는 광고 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선거 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5)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3항)
-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를 집행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 제5호)

※ 재외선거권자 :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자

## □ 기타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과 관련하여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에 인터넷매체를 통한 정보전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을 포함)이 인터넷신문·포털 등 인터넷매체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발행·배부횟수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바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인터넷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무방하나 광고횟수·내용 등이 통상적인 안내 목적을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이를 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터넷 광고에 출연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임 ('09.6.11)

○ 인터넷 언론사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 광고를 집행할 수 없음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제15조)

○ 선거전일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한 광고 및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제16조 제1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 농업인을 위한 라벨에 있어 이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과 이름 및 인터넷주소와 전화번호를 삽입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선거일 전 90일부터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이 게재된 라벨을 농·특산물에 부착하여 그가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광고 출연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성명·경력·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안 됨(「인터넷선거제도 심의기준」 제16조 제2항)

## □ 인터넷 선거 광고 관련 판례

- 「공직선거법」 상의 ‘후보자 비방’ 의 의미 및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함. 한편, 위 조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례.

-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판단 요건

▶ 대법원 2007.8.24 선고 2007도4294 판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 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의 의미

▶ 대법원 1996.5.31 선고 96도753 판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라 함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모든 광고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러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일상의 생활, 통상의 거래행위나 상업 광고 등에서의 성명의 표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용자제작콘텐츠(UCC)를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1376 판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적용대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되는 것이 유형물이 아니라 전자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컴퓨터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일상 생활화된 이른바 정보통신시대에 있어 이용자제작콘텐츠(UCC)는 유체물인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제작물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례(한정위헌결정)

▶ 2011.12.29 선고 2007헌마100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 사례

□ 광고주 자격요건

- 광고의 주체는 해당 선거의 후보자이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도 해당됨(「공직선거법」 제82 조의7제1항)

## VI. 법령 정보

### □ 인터넷 광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7)

- 광고주체 : 후보자[대통령선거의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광고매체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 광고방법 :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선거광고”라고 표시)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함. 한편,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음(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제82조의7(인터넷광고)

-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10.1.25.>
- ⑤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 ⑥ 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선거 광고의 제한

#### ○ 일반적으로 허용된 인터넷 등 이용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

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인터넷)언론사는 법 제8조(공정보도의무)의 직접적 수범자이므로 그 편집·보도공간에 해당하는 홈페이지의 경우는 선거운동에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다만 제3자의 참여로 구성되는 게시판·대화방 등은 선거운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음

※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선거운동정보 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하고,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

## ○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공직선거법 제271조의 2)

-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여기서 “광고”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제외함)를 말함. 이러한 중지요청을 받은 자가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함.

## ○ 후보자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의 금지(법 제93조제2항)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 ○ 선거기간 중 법정외 광고의 금지(법 제94조)

-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음.

## □ SNS 선거 광고 관련 요건

### ▶ 예비후보자의 페이스북광고 관련 질의 <인터넷질의>

#### 【 문 】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의 페이스북광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직선거법 82조의 7을 보면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인터넷광고는 후보자 본인의 경우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선으로 문의드린 결과 공직선거법 93조에 의해 불가능하다 답변주셨습니다. 93조에서 언급한 '광고'라는 것은 인터넷광고를 제외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82조 7과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또 법령질의 중 후보자정보제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이용 인터넷 광고는 무방한 것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인터넷 광고가 가능 한 것인지, 페이스북페이지 광고가 82조 7에 명시된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 】

1. 귀문의 경우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예비후보자가 광고하거나 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2조의7·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페이스북”의 「공직선거법」제82조의7 소정의 “인터넷언론사”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2012. 10. 26.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질의에 대한 2012. 10.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문 】

「공직선거법」제82조의7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NS를 통한 후보자 선전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페이스북의 '스폰서광고'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7에 규정된 인터넷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페이스북의 '스폰서광고'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규정된 선거운동정보로 볼 수 있는지
3. 후보자(정당)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페이스북을 통해 '스폰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 페이스북 스폰서광고 : 노출수 또는 클릭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광고 (2012. 10. 26. 새누리당 사무총장 질의)

#### 【 답 】

귀문의 경우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페이스북에 선거운동을 위한 스폰서광고를 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12. 10.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



## □ AR(위치기반 증강현실) 선거 광고 관련 요건

### 【 문 】

본사는 광고홍보업체입니다. 최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기술을 적용한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시장 출시를 앞두고 2018년 지방선거에 AR 기술을 적용한 선거홍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GPS 기술이 발전하여 각종 인쇄물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의 특정위치 좌표를 마커로 설정하여 AR 기술로 제작된 이미지, 영상, 홀로그램 콘텐츠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바,
2. 선거인이 스마트폰 전용 AR 앱을 구동하여 특정위치 좌표(선거구내 역사유적, 지역현안현장 등)를 인식하면 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AR 선거홍보 영상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3. 위와 같은 선거홍보에 소요되는 아래경비는 선거비용에 해당되어 보전대상이 되는지?
  - 특정위치 좌표에 설정한 마커와 의뢰인의 홍보콘텐츠를 연결하는 비용 및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관리비용(구축된 웹사이트 사후 관리와 동일함)
  - 의뢰인의 홍보콘텐츠(동영상, 이미지 등) 제작비용

#### ※ 관련 용어

- ①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 현실에 존재하는 이미지에 가상 이미지(동영상)를 겹쳐서 하나의 이미지(동영상)로 결합하거나 늘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말함. ex) 계기판 전방표시장치(HUDs), 구글 글래스 등
- ②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 인공위성(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을 말함.ex) 위치기반서비스(내비게이션, 현위치 주변 맛집 검색,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 등)
- ③ 마커 : AR 앱이 인식·구동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무형의 위치좌표가 QR코드와 비슷한 역할을 함.
- ④ AR 선거홍보 콘텐츠(이미지, 영상, 홀로그램)는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블로그, SNS)에 존재할 뿐, 현실세계에 설치·게시하는 것이 아님.

### 【 답 】

귀문과 같이 증강현실(AR)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그에 지출된 비용은 같은 법 제1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합니다.

□ 신문 광고 (공직선거법 제69조)

- 광고기간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 광고주체 :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 광고매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
- 광고방법·내용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아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 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함)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되, 광고근거(“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함.

※ 광고비용은 선거기간중 같은 지면, 같은 규격의 상업·문화 그 밖의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광고횟수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회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총20회 이내,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총 5회 이내(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때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함)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봄.

## [관련 규정]

### 제69조(신문광고)

-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大統領選舉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大統領選舉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때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 ② 제1항의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③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회수는 해당 후보자가 각각 1회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비용은 해당 후보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④ 삭제 <2010.1.25.>
- ⑤ 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전에 이 법에 의한 광고임을 인정하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를 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삭제 <2010.1.25.>
- ⑦ 삭제 <2000.2.16.>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에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신설 1998.4.30.>
- ⑨ 인증서의 서식, 광고근거의 표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방송 광고(공직선거법 제 70조)

- 광고기간 : 선거기간 중
- 광고주체 :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 광고매체 :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1회 1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방송법에 의한 방송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업자의 채널을 포함)을 말함.
- 광고방법·내용 :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1회 1분 이내에서 광고하되, 해당 방송사는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 등을 그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나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함  
⇒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되, 그 순서가 같을 때에는 이용횟수(계약이 이루어진 횟수를 포함)가 적은 신청인의 순서에 의하며, 이마저 같을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함.

※ 광고비용은 선거기간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그 밖의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송광고내용의 녹음·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광고횟수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각 15회이내, 시·도지사선거는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각 5회 이내

※ 광고횟수의 계산은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 [관련 규정]

### 제70조(방송광고)

- ①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 ② 삭제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방송광고는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광고를 함에 있어서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⑥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 ⑦ 삭제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 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 □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질의

- SNS에 정당 대표 또는 기타 인원이 후보자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
  - 임의기구가 올린다는 전제.(팬클럽)
  - 금적 대가를 받는 업체가 올린다는 전제.(광고회사)
  -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를 포함한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간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팬클럽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귀문과 같이 후보자 활동영상 등을 유튜브·카카오톡·페이스북에 등록·게시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등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업체가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또는 전송을 의뢰 받아 기술적인 업무 또는 단순 보조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통상적인 비용을 받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기술적으로 단순히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범위를 넘어 후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을 직접 제작하여 게시·전송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018.05.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 광고회사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광고를 수주받아 SNS상으로 인터넷 선거광고가 가능한지의 여부
  - 불가능.
  - 원칙적으로 인터넷 선거광고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함. 그러나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의 아웃링크가 SNS상에 업로드 돼서 일반인이 아웃링크 배너를 클릭하여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선거광고를 보는 것은 가능. (서울선거관리위원회 해석.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거 해석과는 상이함.)